

반독점 정책

제1조 (목적) 현대건설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/지역에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자 반독점정책을 제정하고, 이를 통하여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과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활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.

제2조 (정책) 현대건설은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현대건설은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, 이와 관련하여 다음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.

① 가격담합 금지

현대건설은 시장 독점 상황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를 통한 일체의 부당 이익 취득을 금지합니다.

② 입찰담합 금지

현대건설은 경쟁사 또는 제3자와의 결탁에 의한 입찰 담합을 통한 일체의 부당이익 취득을 금지합니다.

③ 시장할당 금지

현대건설은 경쟁사 또는 제3자와의 결탁에 의한 시장할당 또는 시장분할 체제를 통한 일체의 부당이익 취득을 금지합니다.

④ 집단 보이콧 금지

모든 입찰 참여 여부는 합법적인 사업 타당성을 근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며 일체의 부당한 집단 보이콧을 금지합니다.

제3조 (적용범위정책)

①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현대건설 국내외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 및 자회사, 당사가 출자한 합작 법인을 포함합니다.

② 독점금지 및 공정 거래 원칙의 준수는 현대건설 사업의 핵심요소에 해당됩니다. 당사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파트너사,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에 독점금지 및 공정 거래 법규의 엄정한 준수를 기대합니다.

제4조 (보고) 현대건설은 가격담합, 입찰 담합, 시장할당, 집단 보이콧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내/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성실히 보고하고,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원칙과 법률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.